

ESG위원회 규정

(2024. 02. 27 개정)

HYUNDAI
corporation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본 규정은 상법 제 393 조의 2 및 현대코퍼레이션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)의 정관 제 23조의 8에 따라 ESG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기준)

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본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관련내용의 취지와 상관례를 고려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.

제 3 조 (규정의 제정 및 개정)

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제 2 장 위원회

제 4 조 (직무와 권한)

- ① 위원회는 제 12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, 의결한다.
- 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.

제 5 조 (구성과 임기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“위원”)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의 결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, 3분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당해위원의 이사 임기와 동일하며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면 위원의 자격도 당연 상실한다.
- ④ 사외이사인 위원이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요건을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초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 구성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제 11 조에 정한 결의방법에 따라 사외이사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.
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- ④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되,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7 조 (삭 제)

제 3 장 회 의

제 8 조 (종류)

-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.
- ② 정기위원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.
-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9 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제 6 조 제 4 항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10 조 (소집통지)

위원장 또는 위원회 소집권자는 회일로 정한 일자의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소집을 문서, 전자우편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 11 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
- ② 위원회 위원이 음성을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12 조 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① ESG 전략의 수립 및 이행
 - 1. 회사의 ESG 전략방향, 계획, 이행 관련 사항
 - 2. 회사의 사회적 책임 관련 사항 심의
 - 3. 회사의 ESG 역량 개발 및 내재화를 위한 지원필요 사항
- ②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 전략의 수립 및 이행
 - 1. 리스크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
 - 2. 리스크 관리 활동 관련 필요사항 파악, 이행 및 평가 등
- ③ 회사와 계열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심의 및 관련 정책 수립
- ④ 기타 이사회가 위임하거나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체 사항

제 13 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 등)

-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 14 조 (의사록 등)

- ① 위원회는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처리 경과, 그 결과, 안건에 찬성한 자와 반대한 자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14 조 (보고의무)

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

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